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쇄사 신고절차 간소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34호)

2025.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인쇄사 신고절차 간소화 ····· 2

Ⅰ.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1. 7.

다. 회부연월일 : 2024. 11.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인쇄사 신고절차 간소화

가. 개정안 요지

○ 인쇄사 경영을 위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시장 등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신고) ① (생 략)	제12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2조는「출판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이를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1]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법한 인쇄업 신고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 인쇄업 신고사항은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경영자의 주소・성명 등[2]으로,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의 심사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절차를 완화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은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1) 동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인쇄업 외에도 출판업·영화업·비디오물제작업·음반업 등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영업 신고를 기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3]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 법령정비 계획(신고절차 완화)>

연번	법령명	정비 사항
1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기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2	수산업법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등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사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사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9	축산법 시행규칙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문 의 처
02)6788-5380

3)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 자체가 행정기관에 도달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관계법상 행정청에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신고로서,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함.